

	<h2 style="margin: 0;">사회봉사활동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3-1-39	
			제정일자	2013.07.17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	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교직원

**제2조(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)**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
- ②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(사회문화단체, 체육단체, 장학단체, 사회 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등)
- ③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
- ④ 공공기관 의뢰, 교육, 강연, 평가, 출제, 심의위원 활동
- ⑤ 국내·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
- ⑥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교육 및 특별강연
- ⑦ 산업체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
- ⑧ 학생 봉사 활동 지도
- ⑨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

**제3조(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지원)**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)**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·관리한다.

**제5조(교직원 봉사상)**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직원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학 생

**제6조(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)**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(노인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시설, 보육시설, 지역사회 복지관 등)

- ② 공공기관 봉사활동(구청, 동사무소, 소방서, 우체국, 도서관, 보건소, 학교 등)
- ③ 사회공익 봉사활동(환경보호활동, 청소년 지도활동, 시민 공익단체 등)
- ④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
- ⑤ 지역사회 봉사활동(농촌 봉사활동, 탄광촌 봉사활동,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)
- ⑥ 가정복지 봉사활동(장애인 가정, 무의탁 노인,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)
- ⑦ 공인 기관(대학사회봉사협의회, 한국장학재단 등)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
- ⑧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 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

**제7조(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)**

- 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은 학생지원팀에서 총괄하며 사회봉사 활동 운영에 대한 심의, 평가 등은 학생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- ②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선발 방법, 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은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- ③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- ④ 학생이 개인 또는 팀별로 국내의 공인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,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또는 봉사 기관 발급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본 대학에서 정한 자료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재해책임)** 학생이 사회봉사 활동기간 중 부상 등을 입거나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**제9조 (학생 사회봉사상)**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**제10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칙에 따른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